



제438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격 훈련 사전 통보 및 최저 보상금액 보장〉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45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사격 훈련 사전 통보	3
2. 보상금 공제·감액 시 최저 보상금액 보장	5
※ 참고자료	8
1.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8
2.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보상금 기준 금액	9

I. 제안경위

1. 발의자 : 김용태 의원 등 10인
2. 발의일 : 2026. 6. 30.
3. 회부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격장 등에서의 사격 훈련 일정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일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격 훈련 정보의 사전 통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전입 시기 등에 따른 보상금의 공제·감액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질뿐 아니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기 위한 소음 측정·평가·분석 비용이 전체 소음피해 보상금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긴급한 군사훈련을 제외하고는 군사격장의 사격 훈련 일정에

대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소음피해 보상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도 최저 보상금액을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음대책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신설 및 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격 훈련 사전 통보(안 제12조의2 신설)

- 개정안은 군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그 일정을 소음대책지역¹⁾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사격 훈련 사전 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군사격장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일정을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군사작전 또는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군소음보상법」 제2조(정의) 4.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③ 사전 통보의 방법·절차, 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은 군사격장의 사격 훈련 일정을 소음대책지역 주민 등에게 사전에 통보·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실무상으로는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국방부훈령)²⁾ 및 각 군의 자체 지침에 따라 훈련장 사용부대 등이 관련기관에 훈련장 사용계획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부대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사격 훈련에 따른 소음은 주민의 생활상 불편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훈련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소음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현재 훈령 및 각 군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 안내를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제도의 통일성 확보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제5조(기관별 임무) 훈련장 갈등관리를 위해 국방부, 각 군 및 국직 부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3. 훈련장 사용부대

나. 훈련 전 관련기관(민·관)에 훈련장 사용계획 통보

-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훈련 일정 변동 등 상황 변화 시 변동된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사전 통보의 주체를 ‘국방부장관’에서 ‘관할부대장’³⁾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보상금 공제·감액 시 최저 보상금액 보장(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 개정안은 보상금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보상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 ----- ----- ----- ----- 다만,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산출된 보상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보상금액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14. “관할부대장”이란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 동법 시행령은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보상금 기준 금액을 1인당 제1종 구역 월 6만원, 제2종 구역 월 4만 5천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원으로 정하고 있음.⁴⁾

□ 현행법은 보상금을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전입 시기에 따라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1988년 매향리 사격장 소음 피해 사건⁵⁾, 2010년 대구비행장 소음 피해 사건⁶⁾ 등 소음 피해 문제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입 시기별 감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 피해 문제를 인지한 상태에서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주변으로 전입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전입 시기에 따라 보상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감액하는 것임.

[전입 시기별 감액 기준]

법령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전입 시기	1989.1.1. ~ 2010.12.31.	2011.1.1. ~
보상금 감액 기준	30% 감액	50% 감액

4) 참고자료 2 참조

5) 1951년 미국 공군에 의하여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에 만들어진 매향리 사격장은 1년 250일, 하루 600회에서 700회의 사격 훈련이 진행되어 소음 피해는 물론 오발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하여 1988년 6월 ‘매향리 미 공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성되어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짐. 2005년 9월에 매향리 사격장은 폐쇄되었음.

6) 대구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에 1심 판결이 있었고, 이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2010년에 확정되어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되었음.

- ☐ 개정안은 이러한 공제·감액의 결과 실제 보상금 지급액이 소액인 경우를 고려하여 최저 보상금액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감액 규정의 제정 배경 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 ☐ 국방부는 최저 보상금액을 보장할 경우 실제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피해에 상응한 보상 제도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보상금 공제나 감액 규정의 경우 소음 관련 손해배상사건의 판례에 의해 정립된 기준을 적용한 것임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09

※ 참고자료

1.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시행령 별표)

구 분		소음대책지역	기 타	소음영향도 기준
군용비행장		제1종 구역	-	95웨클 이상
		제2종 구역	-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등 ⁷⁾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기타 ⁸⁾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군사격장	대형화기	제1종 구역		94(dB(C)) 이상
		제2종 구역		90(dB(C)) 이상 94(dB(C)) 미만
		제3종 구역		84(dB(C)) 이상 90(dB(C)) 미만
	소형화기	제1종 구역		82이상(dB(A))
		제2종 구역		77(dB(A)) 이상 82(dB(A)) 미만
		제3종 구역		69(dB(A)) 이상 77(dB(A)) 미만

※ WECPNL(웨클,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측정된 최고 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일일평균 운항횟수를 시간대별로 가중하여 산출한 소음도

※ dB(C): 하루 동안의 사격 소음 전체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대형화기 사격 소음의 특성과 사격 시간대를 고려한 보정값을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

※ dB(A): 하루 동안의 사격 소음 전체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소형화기 사격 소음의 특성과 사격 시간대를 고려한 보정값을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구광역시, 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등

8) 세종특별자치시, 강릉시, 군산시, 서산시, 오산시, 원주시, 청주시, 충주시, 평택시, 예천군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등

2.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보상금 기준 금액

【 보상금 기준 금액(시행령 제11조제2항) 】

구 분	보 상(1인당)
제1종 구역	월 6만원
제2종 구역	월 4.5만원
제3종 구역	월 3만원

※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에는 월별 실제 사격 일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월의 보상금의 기준 금액을 산정 (시행령 제11조제3항)

1. 사격이 없는 경우: 보상금 미지급
2. 사격 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1 지급
3. 사격 일수가 8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3분의 2 지급
4. 사격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 지급